

영등포구의회  
제194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 
전부개정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6. 4. 29.

行 政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 金 基 永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 
전부개정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## 1. 경 과

의안 제129호로 2016년 4월 14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4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 2. 제안이유

지방세 관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세 자치법규 전부개정을 추진 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부과·징수사무의 위임 등(안 제3조), 서류송달의 방법(안 제5조)
- 나. 교부금전의 예탁(안 제6조),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(안 제7조)  
지방세심의위원회(안 제8조)
- 다.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(안 제4조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: 「지방세기본법」,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: 별도 예산조치 필요 없음

## 5. 검토의견

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지방세기본법」 및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, 중복규정이나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규정 등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.

〈조례정비 내역〉

| 현 행              |         | 개 정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
| 제1장 총칙           | 1조~10조  | 1조~9조 |
| 제2장 부과징수         | 11조~25조 |       |
| 제3장 체납처분         |         |       |
| 제1절 압류 및 해제      | 26조~34조 |       |
| 제2절 처분           | 35조~39조 |       |
| 제3절 회생절차 중의 체납처분 | 40조~47조 |       |
| 제4장 보칙           | 48조~53조 |       |

- 현행 4장 3절 53개 조항의 법규체제를 9개 조항으로 대폭 줄이고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한 개정 내용을 보면,
-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목적규정, 다른 법령과의 관계, 부과·징수사무의 위임,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, 서류송달 방법 등 조례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,

-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교부금전의 예탁, 부과·징수사무의 위임,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,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근거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-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부과징수, 체납처분, 압류 및 해제, 공매처분, 회생절차 등과 관련된 조항은 「지방세기본법」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및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 하였는바, 이는 상위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자치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, 행정력 낭비, 제때에 개정되지 않을 경우 조례 효력에 대한 다툼 등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보임.
-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, 법령과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입법 경제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사례가 될 것이며, 조문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법률상식이 생활 속에서 통용될 수 있는 입법 모범사례가 될 것임.